

문서번호	재무과-1017 39	★주무관	지출팀장	재무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결재일자	2015. 11. 25.	장지선	최인숙	김영모	이상형	하철승	11/25 박경수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협 조					
보도여부			기획예산과장	조상연			
			법무팀장	이기호			
			주무관	송수연			



**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 및
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소인규정」 폐지 계획**

2015. 11. 23.

강 북 구
[재 무 과]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」 전부개정 및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소인규정」 폐지 계획

개정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」에 따라 수입증지 규칙을 전면 정비하고, 존치 이유가 없어진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소인규정」을 폐지하여,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I 추진 배경

-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(서울특별시조례 제5554호): 2013. 08. 01.
- 서울특별시 종이수입증지 폐기: 2013. 11.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개정 (조례 제994호): 2014. 08. 08.
- 강북구 종이수입증지 폐기: 2014. 10. 07.

II 개정 및 폐지 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」 전부 개정 완료에 따라
 -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: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 정비
 - 수입증지소인규정 폐지: 조례에 수입증지 소인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

III 주요 내용

1.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: 전부개정(조문의 2/3이상 개정)

- 조례 개정 및 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항 삭제
 - 종이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에 관한 조항 삭제
 - 종이수입증지 취급공무원, 판매 계약, 판매인의 요건 및 의무, 판매상황 보고, 교환 등에 관한 조항 삭제
- 현재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 규격 정의(조례 제5조에 의거)
- 종이수입증지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별표 1,2,3 및 별지 제1호~10호 서식 삭제
- 별지 제11호서식을 수입금의 일일결산 관련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비(안 제3조)
- 계기 고장시 수수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표 고무인 추가(안 제4조)
- 계기의 관리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 추가(안 제6조)

2.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입증지소인규정 : 폐지

- 조례에 수입증지소인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존치이유 자동 소멸로 폐지

IV 참고사항

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실시

- 서울시특별시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(안) : 원안동의
- 서울시특별시강북구 수입증지소인규정 폐지(안) : 해당사항 없음

V 향후 추진일정

■ 추진일정

- 2015. 11. 27. ~ 12. 16. : 입법예고
(※수입증지소인규정 폐지(안)은 입법예고 해당사항 없음)
- 2015. 12. 23. : 조례·규칙 심의회 상정
- 2016. 1. : 공포 및 시행
※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.

- 붙임 :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(안) 1부.
2.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소인규정 폐지규정(안) 1부. 끝.